



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

수신 각 조합원사

(경유)

참조

제목 자동차공제약관 개정에 따른 안내

1. 귀사의 부족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국토교통부 자동차운행보험과-4392(2022. 07. 12. 공제조합 자동차공제약관 개정 승인 일령.)에 의거, 우리조합 자동차공제약관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개정되어 본부에서 개정된 약관이 도착하는 대로 발송예정임을 안내드리며,
3. 개정된 내용 중 2022. 07. 28.일 이후 신규·갱신계약을 하는 차량부터는 “마약·약물운전, 음주·무면허운전·행소니사고”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음을 재차 안내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.

- 아 래 -

마약·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및 상향

○ 음주운전과의 형평성,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·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 신설(1차, 2차 개정) 및 상향(3차 개정)

구 분	현 행	신 설		상 향
		1차 개정 ('22.1.1~)	2차 개정 ('22.6.8~)	3차 개정 ('22.7.28~)
대인 I 대물 (2천만원 이하)	-	-	1천 5백만원 (대인 I 1천만원, 대물 5백만원)	한도* 내 전액
대인 II 대물 (2천만원 초과)		1억 5천만원 (대인 II 1억원, 대물 5천만원)	좌동	좌동

* 대인 I → 사망·후유장애(1급): 1억5천만원, 부상: 3천만원(1급)~50만원(14급)
대물배상→손해액 2천만원 이하

음주·무면허 운전·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황

○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경제적 책임부담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지속에 따라 사고부담금 상황

구 분		현 행		개 정 ('22.7.28~)
사고유형		음주운전	무면허·뺑소니	음주운전·무면허·뺑소니
사고 부담금	대인 I	1천만원	3백만원	한도* 내 <u>전액</u>
	대물 (2천만원 이하)	5백만원	1백만원	
	대인 II	1억원		좌동
	대물 (2천만원 초과)	5천만원		좌동

* 대인 I → 사망·후유장애(1급): 1억5천만원, 부상: 3천만원(1급)~50만원(14급)
대물배상 → 손해액 2천만원 이하. "끝".

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회
경기지부장



담당 이석원

인사차장 김승환

사무장 김병성

본부장(전과 07/27)
사무이사 오세현

별첨 1

시형 경기 제109/8호 (2022.07.27)

종결 ()

우 153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 (송죽동, 경기회관 5.0층) / <https://www.truck.or.kr>

전화 031-242-3355 팩스 031-258-3355 / 19950318@truck.or.kr /